

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

(이도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10.

발 의 자 : 이도재, 백선아, 원병일,
박은경, 박성찬, 김진희,
이영환, 최성임, 장근환

1. 제안 이유

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, 전문가 자문 등의 관한 사항을
규정함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

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인터넷중독”이란 컴퓨터,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추진)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
2.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

3.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
4.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예방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전문가 등 자문) ①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8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,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계비용 미작성함
<지원 예상액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소요 예상액	35,515	35,515	35,515	35,515	35,515

※ 기편성 된 「청소년 사회단체 지원」 예산액

- 「청소년 사회단체 지원」은 청소년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(공모)으로,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단체가 공모신청 시 지원 가능

4. 작성자

- 미래인재과장 남경화

☑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